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544 |
|----------|-----|

2024. 4. 30.(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이태훈 의원 등 7인
- 나. 제출일자 : 2024년 4월 11일
-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11일
- 라. 상정일자 : 2024년 4월 23일
 -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태훈 의원)

가. 제안사유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을 규정함(안 제3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가. 제정 필요성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1989.04.01. 시행)되어 시행되고 있고, 동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와 그 산하 조직에 지원하고 있었음.
-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현재 9개 자치단체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표-1 참조).

[표-1] 광역자치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조례 제정 현황

(2024.3.31.기준)

| 연번 | 시·도 | 조례명 | 제정일 |
|----|-----|-------------------------|-------------|
| 1 | 전남 | 전라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 2012.12.27. |
| 2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2013.05.10. |
| 3 | 경남 |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 | 2014.02.13. |
| 4 | 부산 | 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2015.01.01. |
| 5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2018.04.04. |

| 연번 | 시·도 | 조례명 | 제정일 |
|----|-----|-------------------------|-------------|
| 6 | 울산 |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2018.07.12. |
| 7 | 경기 |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2019.07.16. |
| 8 | 대전 | 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2023.08.11. |
| 9 | 충남 |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 | 2024.02.20. |

-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 중 현재 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표-2 참조).

[표-2] 충북 기초자치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조례 제정 현황

(2024.3.31.기준)

| 연번 | 시·군 | 조례명 | 제정일 |
|----|-----|------------------------|-------------|
| 1 | 제천 | 제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 | 2013.12.27. |
| 2 | 단양 |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 2014.09.19. |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 는 조례의 목적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명시함.
-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한국자유총연맹” 의 용어를 정의하여 그 개념과 대상을 명확히 함.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라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조’ 는 도지사가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 안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
- ‘안 제6조’ 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중복지원의 금지 내용을 규정함.
- ‘안 제7조’ 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규정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제정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에 지원하던 것을 조례를 통해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의 사업 활동에 대한 사기진작과 격려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 됨.

- 다만,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국가도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및 출연재산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 현황]

- 지원 근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설립 : 1954. 6. 15.(2000.5.16. 비영리단체 등록)
- 조직 및 회원 수 : 도 지부 및 11개 시군 지회, 29,130명
- 사무실 소재지 : 청주시 상당구 종고개로 187(용암동, 자유회관)
- 주요사업 : 자유 수호 및 안보의식 제고, 통일준비, 안보시찰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와 그 하부조직인 시·군·구 지회 및 읍·면·동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 및 활동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도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정신의 계승발전 및 건강사회 실현을 통해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사업비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 조례안 제4조(지원)
- 조례안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4. 비용추계 결과

- 재정수반요인 :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소요예산
- 추 계 기 간 : 2024년부터 2028년부터 5년간으로 함
- 추 계 결 과 : 1,077,265천원(도비 450,690천원, 자부담 626,575천원)
 -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 등 3개 사업
- 재원조달방안 : 도비 41.8%, 자부담 58.2%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행정국 도민소통과장 이택수

